

##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어려운 터미널 방문객 추이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과거 도입된 터미널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과 부대시설에 속하는 시설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 명확화(안 제8조의7제1항)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를 명시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간이세차장 설치 예외 조건 명시(안 별표 비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터미널 주차장 일부를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간이세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로 한다.

제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의 종류별 면적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간이세차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의 주차장 중 일부를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 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u>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u>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u>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 ----- ----- ----- <u>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u>----- -----.</p> <p>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① <u>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매표실</u></li> <li>2. <u>대합실</u></li> <li>3. <u>정류장소</u></li> <li>4. <u>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 다)</u></li> <li>5. <u>주차장(유도차로, 조차장소를 포함한다)</u></li> <li>6. <u>화장실</u></li> <li>7. <u>사무실</u></li> <li>8. <u>안내실</u></li> <li>9. <u>배차실</u></li> <li>10. <u>승무원휴게소</u></li> <li>11. <u>간이세차장</u></li> </ol> <p>② <u>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u></p>
<p>&lt;신 설&gt;</p>	

설의 종류별 면적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